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주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명문화되어 있는 수수료기준 및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폐기물에 대한 동별 수수료 부과·징수시 일관성이 없기에 주민불만 및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대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불식하는 한편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함

나.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별표1”)
 - 현행 - 12개 품목 및 기타품목(1995. 2. 16 조례 제1332호에 개정된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개선 - 22개 품목 및 기타품목을 추가조정(총 34개 품목 및 기타품목)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수수료 기준 및 품목이 세분화되면 예산의 증·감이 있는가?		○ 예산은 변동이 없음	
○ 대형폐기물 품목 중 텔레비전은 규격을 세분화하든지 한 가지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너무 세분화하면 배출하는 주민에게 혼동이 될 것 같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2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명문화되어 있는 수수료기준 및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폐기물에 대한 동별 수수료 부과·징수시 일관성이 없기에 주민불만 및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대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불식하는 한편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함

□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별표1”)
 - 현행 - 12개 품목 및 기타품목(1995. 2. 16 조례 제1332호에 개정된 품목 및 수수료 기준)
 - 개선 - 22개 품목 및 기타품목을 추가조정(총 34개 품목 및 기타품목)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500 l 이상	8,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300 l 이상	6,000			
	300 l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장 룡	120cm장 1쪽	15,000
	12인치 이상	3,000		90cm장 1쪽	10,000
세 탁 기	모든규격	4,000	소 파	대형6인용	8,000
				소형4인용	5,000
에 어 컨	264m' 이상	8,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66m' 이상	5,000			4,000
	66m'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2,000		6인용 미만	4,000
탈 수 기	모든규격	2,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간 판	60×180cm 이상	7,000	고 무 통	90×100cm 이상	4,000
	60×180cm 미만	4,000		90×100cm 미만	3,000
	입간판	2,000		70×80cm 이하	2,000
문 갑	문갑1쪽당	4,000	문 작	대(현관문)	3,000
				소(창문)	2,000

자 전 거	성인용 어린이용	3,000 2,000	서 랫 장	5단 이상 4단 이하	6,000 4,000
침 대	1인용침대 1인용매트리스 2인용침대 2인용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29인치 미만 20인치 이하	10,000 5,000 4,000
오 르 간	모든규격	4,000	싱 크 대	개수대, 찬장(개당) 가스레인지대(개당)	3,000 2,000
캐 비 넷	철재 화일캐비넷 4단 이상 화일캐비넷 3단 이하	4,000 3,000 2,000	화 장 대	폭(120cm 이상) 폭(120cm 미만)	8,000 5,000
신 발 장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5,000 4,000	책 꽃 이 (책 상 용)	3단 이상 2단 이하	3,000 2,000
장 식 장 (책 장)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7,000 5,000	수 족 관	대 소	7,000 3,000
차 단 스	90×180cm 이상 90×180cm 미만	10,000 6,000	카 페 트	210×210cm 이상 210×210cm 미만 180×180cm 이하	12,000 8,000 5,000
쌀 통	다용도 일반	3,000 2,000	밥 상	대 소	3,000 2,000
소 파	1인용	3,000	오 디 오	대형 이상 중·소형	5,000 3,000

○ 기타품목 수수료기준

- 4,000원 : 육조, 재봉틀, 비디오, 앰프, 믹서기, 팬히터, 향아리, 오디오케이스 및 유사한 물품
- 3,000원 : 병풍, 블라인드, 탁자, 정수기, 대형선풍기, 벽시계, 변기통, 세면대 및 유사한 품목
- 2,000원 : 가습기, 거울, 건조대, 변압기,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오디오·TV다이, 옷걸이, 유모차, 스피커, 컴퓨터 모니터·프린터·본체·자판, 조명기구, 휠체어 및 유사한 품목

※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 다량배출되는 배기물 및 깨진유리 등과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명	규격	수수료(원)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5,000			
	12인치 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파	대형6인용	8,000			
	소형4인용	5,000			
책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10,000			
	그랜드	15,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신설)			간 판	60×180cm 이상	7,000
				60×180cm 미만	4,000
				입간판	2,000
			문 갑	문갑1쪽당	4,000
			자 전 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침 대	1인용침대	10,000
				1인용매트리스	5,000
				2인용침대	15,000
				2인용매트리스	8,000
			오 르 간	모든규격	4,000
			캐 비 넷	철재	
				화일캐비닛	4,000
				4단 이상	3,000
				화일캐비닛 3단 이하	2,000
		신 발 장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4,000	
		장 식 장 (책 장)	90×180cm 이상	7,000	
			90×180cm 미만	5,000	
		차 단 스	90×180cm 이상	10,000	
			90×180cm 미만	6,000	
		쌀 통	다용도	3,000	
			일반	2,000	
		소 파	1인용	3,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신설)	고 무 통	90×100cm 이상	4,000	고 무 통	90×100cm 미만	3,000
		70×80cm 이하	2,000		70×80cm 이하	2,000
	문 짝	대(현관문)	3,000	문 짝	대(현관문)	3,000
		소(창문)	2,000		소(창문)	2,000
	서 랫 장	5단 이상	6,000	서 랫 장	5단 이상	6,000
		4단 이하	4,000		4단 이하	4,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10,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10,000
		29인치 미만	5,000		29인치 미만	5,000
		20인치 이하	4,000		20인치 이하	4,000
	싱 크 대	개수대, 찬장(개당)	3,000	싱 크 대	개수대, 찬장(개당)	3,000
		가스레인지대(개당)	2,000		가스레인지대(개당)	2,000
	화 장 대	폭(120cm 이상)	8,000	화 장 대	폭(120cm 이상)	8,000
		폭(120cm 미만)	5,000		폭(120cm 미만)	5,000
책 쪼 이 (책 상 용)	3단 이상	3,000	책 쪼 이 (책 상 용)	3단 이상	3,000	
	2단 이하	2,000		2단 이하	2,000	
수 족 관	대	7,000	수 족 관	대	7,000	
	소	3,000		소	3,000	
카 페 트	210×210cm 이상	12,000	카 페 트	210×210cm 이상	12,000	
	210×210cm 미만	8,000		210×210cm 미만	8,000	
	180×180cm 이하	5,000		180×180cm 이하	5,000	
밥 상	대	3,000	밥 상	대	3,000	
	소	2,000		소	2,000	
오 디 오	대형 이상	5,000	오 디 오	대형 이상	5,000	
	중·소형	3,000		중·소형	3,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자전거, 선풍기, 쌀통, 싱크대, 이와 유사한 품목			욕조, 재봉틀, 비디오, 앰프, 믹서기, 팬히터, 향아리, 오디오케이스 및 유사한 물품	개당	4,000
			병풍, 블라인드, 탁자, 정수기, 대형선풍기, 벽시계, 변기통, 세면대 및 유사한 품목	개당	3,000
			가습기, 거울, 건조대, 변압기,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오리오·TV다이, 옷걸이, 유모차, 스피커, 컴퓨터모니터·프린터·본체·자판, 조명기구, 휠체어 및 유사한 품목		
※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신설)			※ 상기 이외의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 적용하며, 이사·집수리·정원 손질 등 다량배출되는 폐기물 및 깨진유리 등과 같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일반용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적용		